

감사결과 보고서

- 2021년 시의회 행정감사 관련 -

2022. 4.

서울에너지공사
감 사 실

목 차

I . 감사실시 개요	1
II . 감사대상 업무현황	2
III . 감사결과	5
IV . 처분요구 일람표	7
V . 행정사항	7

2021년 시의회 행정감사 관련 특정 감사결과 보고

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수감결과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1 감사실시 개요

관련근거

- 202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(2021. 11. 9.)
- 2022년 연간 감사계획(감사방침-432호, 2022. 2. 11.)
- 특정감사 실시계획(감사방침-697호, 2022. 3. 8.)

감사배경

- 2021. 11. 9. 서울시 행정감사 수감 결과, 공사 태양광사업 및 출자금 관리, 교대근무 시간 외 근무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

감사범위 및 중점감사대상

- 감사범위: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아 수행하고 있는 ○집단에너지건설·태양광사업에 대한 출자금 관리 및 태양광사업에 대한 최근 서울시 특별점검 이후 이행실태와 플랜트 교대근무자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적정성 조사

○ 중점감사대상

분 야	중 점 사 항
태양광발전사업	-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전반 ·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, 유지관리 실태 ·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, 유지관리 실태 - 서울시 특별점검 이후 이행실태 적정 여부 등

출자금관리	- 서울시 출자금 관리 집행 실태(2개 분야) · ○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출자금 운영 적정성 · 태양광발전사업 출자금 운영 전반
교대근무 시간외근무	- 플랜트 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무 및 수당 지출 현황 · 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무 적정성 · 인건비(수당) 산정 및 지출 현황

□ 감사방법

○ 감사기간 및 인원

구분	직·성명	담당업무	감사기간
총괄	감사실장 A	- 총괄	3. 10.(목) ~ 4. 8.(금) (22일) *사전조사(9일) (3. 10~3. 22)
전담	차장 B	-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실태 -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현황	
-	과장 C	- 교대근무 시간외 근무 실태 - 교대근무 시간외 수당 산정 및 지출 - 인건비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	
-	대리 D	- 출자금 운영 적정성 (○집단에너지건설, 태양광발전) - 출자금 관련 법규 및 제규정 준수 여부	

○ 감사과정

- 점검분야(태양광, 출자금, 시간외) 과거 추진 내용 및 실적 등을 포함한 사전 예비조사
- 처리과정 및 실적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(피감사자, 부서장 등) 면담 및 질의서 발송
- 감사 결과는 이사회 승인, 사업계획 및 대행사업계약서, 관련분야 규정 등을 근거로 합리적 처분 요구.

2 감사대상 업무현황

☐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현황

① 태양광 미니발전소('22.3월말 기준) * 2016년~, 서울시 설치기준

○ 설치현황(계)

설치년도	총계(개소)	보급형태	보급업체 수	비고
'16~'21년 (6년)	123,300	베란다형	64개	
		주택·건물형	68개	

○ 베란다형

구분	총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설치개소	120,726	8,304	18,605	41,707	31,312	14,164	6,634
설치업체	64	6	7	18	48	16	16

○ 주택·건물형

구분	총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설치개소	2,574	440	192	261	395	529	757
설치업체	68	18	29	15	23	14	24

② 공공 태양광 시설(서울시 공공시설 설치) *2021. 12월 기준

구분	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설비 수	1,155	733	187	150	85
용량(MW)	37.3	22.7	5.0	4.5	5.1

③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발전소(공사 자체설치)

구분	계	'17년 이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설비 수	15	4	1	3	5	2
용량(MW)	7.18	4.2	0.08	0.5	1.8	0.6

□ 출자금 현황

○ ○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출자금

(단위:천원)

연도	출자예산 편성액 (A)	추경반영 예산 편성액 (B)	집행 금액 (C)	집행률 (C/B)
2019	8,600,000	8,600,000	8,600,000	100%
2020	15,976,000	13,194,040	14,751,180	112%
2021	13,589,000	12,099,606	8,736,604	72%

○ 태양광발전소 출자금

(단위:천원)

연도	출자예산 편성액 (A)	추경반영 예산 편성액 (B)	집행 금액 (C)	집행률 (C/B)
2019	10,426,000	10,426,000	2,405,957	23%
2020	17,599,000	4,982,857	2,648,596	53%
2021	12,250,500	6,200,825	2,069,933	33%

□ 교대근무 시간외 수당 집행

○ 인건비 대 교대근무 시간외 수당 집행 현황 (단위: 억원, %)

구 분	인건비 (A)	시간외수당			
		총액 (B)	교대근무 (C)	B/A(%)	C/B(%)
2020년	171	11	9	6.4	82
2021년	183	12	11	6.6	92

* 시간외 수당: 시간외수당, 휴일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

3 감사결과

□ 총평

- 공사 신재생에너지 발굴,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사업 초기 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중·장기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태양광시설 유지보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.
 - 일부 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궁극적 해결 방안 등이 미흡
- ○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공사 태양광시설 보급사업을 위한 서울시 출자금이 출자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당초 태양광 보급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집행률이 30%에 그치는 등 중요 사업에 대하여 적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향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감안할 때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처분요구는 사업추진 여건, 관련 방침 및 공사 감사·인사규정 등을 반영하였음.

처분요구

○ **총괄**

구분		변상	징계	시정	주의	통보	개선	권고	고발
합계	건					2	1	1	
	금액 (백만원)								

○ **신분상 처분내용: 없음**

주요 지적사항 요지

연번	제목 및 내용
1	<p>공공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 미흡(통보)</p> <p>○ '21.7월 공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등으로 실시된 상급기관 특별점검 결과 공공태양광시설 모니터링 미작동 시설 개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등 유지보수 미흡함에 따라 공사 인사규정 및 감사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 개선대책 수립 시행 처분</p>
2	<p>출자금 목적 외 사용 등(통보)</p> <p>○ ○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서울시 출자금을 목표 달성 부진 등에 따라 재료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함</p> <p>○ 출자금 목적 외 사용 지양 등 예산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필요</p>
3	<p>교대근무 시간외 관리시스템 보완(개선)</p> <p>○ 교대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 관리가 일근자와 달리 시스템과 연결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근무기록 및 수당 산정의 오류 발생 상존, 관련 시스템 개선 필요</p>

4	<p>교대근무·일근자 임금체계 개선(권고)</p> <p>○ 교대근무자 시간 외 근무 및 수당 지급 관련 일근자와의 임금 격차 발생 주요 원인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임금운영 체계 개선 필요</p>
---	---

4 처분요구

○ 처분요구 일람표

연 번	소관 부서	제 목	처분요구	
			구분	명
1	●센터	공공태양광시설 유지관리 미흡	통보	-
2	◎처 ◇부 ◆부	교대근무자 시간 외 근로 실적관리 신뢰성 결여	개선	-
3	◎처	교대근무자와 일근직 간의 임금격차 불균형	권고	-
2	□처 ■처	출자금 집행 부적정	통보	-

- 2021.12.3.일 개정된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따라 처분
- 처분유형 8가지로 통일(변상, 징계, 시정, 주의, 통보, 권고, 개선, 고발)
 - 기존의 개인별 처분에 해당하는 ‘훈계’, ‘경고’, ‘주의’는 처분유형에서 삭제
 - 다만 필요시 변경 처분유형인 ‘주의’, ‘통보’에 포함하여 신분상 처분 요청

5

행정사항

구 분	내 용
감사결과 시행	○ 일시: 상임감사 결재 즉시
대외기관 보고	○ 보고대상: 서울시 및 감사원 ○ 기한: 시행 즉시
감사결과 공개	○ 공개방법: 공사 홈페이지 ○ 기한: 시행 후 14일 이내
재심의 신청	○ 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※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
조치결과 보고	○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통보 - 시정·주의·개선요구 ⇒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결과 통보

- 붙임**
1. 감사결과 요약 보고서 1부.
 2. 처분요구 총괄 및 일람표 1부.
 3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.
 4. 점검(증빙)자료 목록 1부. 끝.